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총액 및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합 계 | 9,129,179,927 | 273,875,398 |
| 일 반 회 계 | 8,084,884,154 | 242,546,525 |
| 특 별 회 계 | 1,044,295,773 | 31,328,873 |
| 기 타 특 별 회 계 | 1,044,295,773 | 31,328,873 |
| 농 어 촌 주 택 사 업 | 8,657,025 | 259,711 |
| 의 료 급 여 기 금 | 617,931,365 | 18,537,941 |
| 동 부 권 | 36,703,641 | 1,101,109 |
| 학 교 용 지 부 담 금 | 18,686,012 | 560,580 |
| 소 방 | 361,706,432 | 10,851,193 |
|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| 611,298 | 18,339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,285,859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“244,100,000천원”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(명시이월 포함)으로 간주처리한다.